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 소유 구조 개선 방안

2015. 4. 16.

변호사 조정래

I. 현행 은행법상 은행 지분 보유 규제

II. 인터넷전문은행과 현행 지분 규제의 문제점

III. 일본 은행법상 규제

IV. 미국 은행법상 규제

V. 국내 은행법상 지분 보유 규제 연혁

VI. 논의 과제

## 현행 은행법상 은행 지분 보유 규제

## ■ 현행 은행법상 은행 지분 보유 규제

- **현행 은행법[2014. 2. 14. 시행, 법률 제12101호 2013. 8. 13. 일부개정]**
  - 은산분리(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 규제와 동일함)
    - 동일인 취득제한: 10% 초과 보유 금지  
10%, 25%, 33% 초과 보유 가능(금융위 승인)
    - 비금융주력자: 4% 초과 금지, 의결권 행사 없는 조건으로 10%까지 가능(금융위 승인)
      - ❖ 아래 경우에는 10%, 25%, 33% 초과 보유 가능(금융위 승인)
        - ① 2년내 금융주력자로 전환할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자
        -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국가기금 등
  - 대주주 거래 제한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자기자본의 25% 또는 대주주 출자비율 해당금액 중 적은 금액
    - 대주주 발행 주식취득 한도 - 자기자본의 1% 한도
      - ✓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0.1% 또는 50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 재적이사 전원 찬성 요함

## ■ 현행 은행법상 은행 지분 보유 규제

### 은행법 제2조 제1항 9호

9. "비금융주력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자의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이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
- 나.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자가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의 그 투자회사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로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

인터넷전문은행과  
현행 지분 규제 의 문제점

## 인터넷전문은행과 현행 지분 규제 문제점

- 현행 은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려 하는 ICT기업을 비롯한 비금융주력자의 경우 의 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은 4%밖에 취득할 수 없음 -> 설립할 유인이 전혀 없음
-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설립 주체와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임
-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은행 지분 보유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및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가 이 발표의 주제
- 이를 위하여 먼저 미국과 일본의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은행 지분 보유 규제의 연혁을 살펴본 후,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장단점 및 그 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 일본의 은행법상 규제 검토

## ■ 현행 일본 은행법상 주식보유 제한

- 전체 의결권의 5% 이상을 소유한 자는 5일 이내에 금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일본은행법 제52조의2의11 제1항)
- 전체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한 자를 주요주주로 정의(일본은행법 제2조 제9항)
- 주요주주가 되려는 자는 사전에 금융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일본은행법 제52조의9 제1항)
- 일본 은행법상 일반사업회사(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배를 특별히 제한하는 명시적인 조문은 없으나, 과거 금융청의 인가 실무상 일반사업회사의 은행 지배는 제한됨

## ■ 일본 은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 일본 은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조항은 없음
- 2000년에 금융청에서 명시적인 인가 지침을 통하여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business model

## ■ 금융청의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배 허용의 배경

- 침체된 금융업의 활성화와 금융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일반사업회사 등 이업종의 은행업 및 보험업 진입을 허용함
- 2000년 8월 3일 금융청에서 제정한 「이업종에 의한 은행참가 등 새로운 형태의 은행업에 대한 면허심사·감독의 대응(운용상의 지침)」에 따라 비금융주력자도 은행의 주요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됨
- 2002년 4월 4일 위 운용지침을 폐지하면서 「사무가이드라인」에 「이업종에 의한 은행참가 등 새로운 형태의 은행」을 추가하였고, 2005년 10월 이후에는 「주요은행 등의 총합적인 감독지침」 제7장의 「은행업에의 신규참여의 취급」에 의하여 규율됨

## ■ 주요주주에 대한 사후적 통제장치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면서, 은행 경영의 독립성 확보 장치, 사업 모회사 등의 사업 리스크 차단 장치,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장치, 자산의 리스크 관리 및 수익성 등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
- 부적격 주요주주의 경우, 주요주주 인가 취소, 주식 처분명령, 의결권 정지 명령 가능
- 50% 초과 지분 보유 주요주주에 대해서는 은행경영의 건전성 확보 의무 부과(일본 은행법 제52조의14)

### ■ 비금융주력자의 구별 여부

- 일본은 2000년 이전에도 은행법상 명시적으로 은산분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금융청이 2000년 이전에는 일반사업회사가 은행의 주요주주가 되기 위한 인가 신청시 인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일반사업회사가 은행 주요주주가 되는 것을 제한.
- 2000년 이후에는 금융청의 인가 지침 변경으로 일반사업회사가 은행의 주요주주가 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은행의 지분 취득에 관한 금융주력자/비금융주력자의 구별이 사라짐

### ■ 우리나라의 '재벌'과 일본의 '계열'의 차이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벌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특정한 소유주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일본도 2차 대전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현재 재벌과 같은 형태의 재벌이 존재하였으나, 2차 대전 이후 미군정에 의하여 재벌이 강제로 해체되면서, 특정한 소유주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거의 '재벌'과 구별하여 통상 '계열'이라고 지칭함
- '계열'에는 우리나라의 재벌과 같은 소유주가 없으므로, 은산분리의 필요성이 우리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미국의 은행법상 규제 검토

## ■ 현행 미국 은행 관계 법령상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 취득에 대하여 일반 은행의 지분 취득과 달리 취급하는 별도의 법령 및 감독규정이 있지는 않고, 일반 은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
- 2000년대 초반 설립된 대부분의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법률체계 내에서 주 또는 연방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자회사 또는 독립법인 형태로 설립되었는데(지방은행, 저축은행 등의 인가를 획득), 상당수는 미국 저축기관감독청(OTS)에서 저축은행 인가를 받았다고 함.
-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인가지침: 통화감독청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인가지침(2001년)을 마련함.

인가지침 관련 주요 내용: ① 1개 이상의 오프라인 영업점 설치, ② Tier 1 capital: 8% 이상, ③ 유동성 위험에 대비한 비상자금조달계획 마련, ④ 금리, 자산가격, 성장성 등 외부환경에 대비한 영업 전략 수립, ⑤ 계좌개설시 고객확인 의무 강화, ⑥ 재해발생에 대비한 재해복구계획 마련.

## ■ 현행 미국 은행 관계 법령상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 은산분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 BHCA)에 따라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 (즉, 은행지주회사)는 직간접적으로 비은행회사를 지배할 수 없고 비은행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BHCA는 은행에 대하여 ①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② 5% 이상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i) 과반수 이상 이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또는 ii)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FRB가 인정하는 경우에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은행지주회사로 정의하고(12 U.S.C. §1841 (a)(2)), 이에 대해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이 요구되며 은행지주회사로서 감독규제를 받게 됨. 은행 주식을 5% 이상 취득하는 경우 위 영향력 행사 여부를 조사하여 은행 지배 여부를 판단.
- 위 은행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지주회사가 될 수 없으므로, 은행지주회사가 되는 요건인 은행 주식을 25% 이상 취득하거나 또는 5% 이상 취득하면서 은행을 지배할 수는 없음. 이를 바꾸어 표현하면, 은행을 지배하지 않는 이상 산업자본은 25%까지 은행 지분 취득 가능 -> 금융자본이 1대주주인 경우, 산업자본은 2대주주로 25%까지 지분 취득하는 것이 가능

## 국내 은산분리 제도 연혁

## 은행법 은산분리 연혁

- 1950년 은행법 제정 이전 (은행법 [1950. 5. 5.제정, 법률 제139호] )
  - 해방 이후 미군정에 몰수: 은행은 정부 소유로 출발
  
- 1950년 은행법 [1954. 8. 15. 시행, 법률 제139호, 1950. 5. 5. 제정]
  - 동일인 주식 취득 제한 없음
  - 은행법 제정 이후: 1954. 10. 14. 은행 귀속주 불하 요강에 따라 민영화
    - 조흥, 한국상업,한국저축(제일은행), 한국흥업기업(한일은행) 등이 소수의 기업가들에 불하됨
    - 1961년 군사정부가 부정축재처리법으로 기업가 소유의 은행주식을 모두 환수하여 은행을 국유화하고, 금융기관임시조치법으로 의결권 행사를 10%로 제한
    - 소수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막고, 은행을 이용하여 경제개발 추진 목적(정부지배하)

## 은행법 은산분리 연혁

- **1983년 은행법 [1983. 1. 1. 시행, 법률 제3608호, 1982. 12. 31. 일부개정]**
  - 동일인 제한: 8% 초과 금지
    - 정부 적용 제외
    - 지방은행에 대하여는 소유한도 적용배제(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 외국과의 합작투자로 설립된 금융기관의 주식취득의 경우 예외 허용
  - 입법배경:
    - 초안에서는 10%로 제안- 임시조치법 의결권 제한 수준 고려
    -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 폐지 - 은행감독원의 임원 선임 승인권/파면권 소멸
    - 시중은행 민영화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편중여신 등 부작용 방지
    - 사금융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10%, 7%, 5% 의견이 있었으나 최종 8% 합의됨
    - 편중여신규제 또는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권을 통한 부당 경영 관여 방지

## 은행법 은산분리 연혁

- **1994년 은행법 [1994. 12. 31. 시행, 법률 제4833호, 1994. 12. 31. 일부개정]**
  - 동일인 제한: 4% 초과 금지 (동일인 범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확대)
    - 외국과의 합작투자 금융기관의 주식취득의 경우 예외 허용(승인불요)
      - ❖ 이후 1997. 1. 13. 법률 개정에 따라 승인필요(승인시 한도 설정)
  - 금융전업기업가: 12%
  - 경영개입의사 없는 기관투자자: 8%
  - 입법배경:
    - 금융자율화의 추진과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 8% 제한 하에서도 과점주주의 담합으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가능성
    - 상법상 소수주주권이 5% 인 점을 감안해 소유한도를 4%로 인하
    - 금융전업가제도에 대하여는 대주주의 존재가 은행의 책임경영 및 경쟁력 제고와 연결된다는 증거가 없으며, 지배주주가 증거를 꺼릴 경우 대형화에 장애요소가 된다는 문제점 지적(동 제도는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함)

## 은행법 은산분리 연혁

- **1998년 은행법 [1998. 4. 1. 시행, 법률 제5499호, 1998.1.13. 전부개정]**
  - 동일인 취득 한도: 4% 초과 금지
    - 아래 경우 각 금융위 승인으로 4% 초과 보유 가능(승인시 한도설정함)
      - ✓ 외국과의 합작투자로 설립된 금융기관의 주식취득의 경우
      - ✓ 외국인이 설립하는 금융기관 설립시
  - 외국인 : 10%까지 허용 - 10%, 25%, 33% 각 초과시 금융위 승인
  - 입법배경:
    - 은행 소유구조 다양화를 통한 대주주 형성이 가능하도록 소유제한에 예외를 인정하되
    - 산업자본의 직접적인 은행경영지배 방지 - 5대 계열집단의 경우 주주대표 및 비상임이사 자격 제한
    - IMF 로 인한 외국인 투자유치 목적
    - 금융전업가 제도 폐지
  
-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법률 제6274호, 2000. 11. 24.]**
  - 동일인 취득한도: 4% 초과 금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보유 예외 허용
  - 금융전업자(인가제) 4% 초과보유 가능(금융위 신고) - 10%, 25%, 33% 승인
  - 은행지주회사 특례: 4% 초과 은행주식 취득가능(이후 현재까지 허용됨)

## 은행법 은산분리 연혁

- **2002년 은행법 [2002. 7. 28. 시행, 법률 제6691호, 2002. 4. 27. 일부개정]**
  - 동일인 취득 한도: 10% 초과 금지 - 10%, 25%, 33% 초과시 금융위 승인
  - 비금융주력자 취득 한도 : 4% 초과 금지
    - 금융주력자로 전환계획 승인시 예외: 금융주력자와 동일 취급
    - 금융위 승인시: 의결권 행사 없음 조건으로 10%까지 취득가능
  - 외국인 비금융주력자: 10% 초과 금지 - 10%, 25%, 33% 초과시 금융위 승인
  - 입법배경: 은행소유규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소유제한 완화하되 금융감독강화 - 동일인이 금융위 승인을 받는 경우 10% 초과 보유 가능-대주주 거래제한도입 (신용공여한도/지분보유한도)
  
- **2002년 금융지주회사법 [2002. 7. 28. 시행, 법률 제6692호, 2002. 4. 27. 일부개정]**
  - 동일인 취득 한도: 10% 초과 금지 - 10%, 25%, 33% 초과시 금융위 승인
    - 금융지주회사가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예외 허용
  - 비금융주력자 취득 한도 : 4% 초과 금지(금융주력자로 전환계획/승인시 예외)
    - 금융위 승인시: 의결권 행사 없음 조건으로 10%까지 취득가능

## 은행법 은산분리 연혁

- **2009년 은행법[2009. 10. 10. 시행, 법률 제9784호 2009. 6. 9. 일부개정]**
  - 동일인 취득제한: 10% 초과 금지 - 10%, 25%, 33% 초과시 금융위 승인
  - 비금융주력자: 9% 초과 금지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10%까지 취득가능(승인요함)
    - 최대주주가 되거나 사실상 경영관여의 경우로 4%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금융위 승인 요함(단순 4%-9%보유는 승인대상 아님)
    - 금융주력자로 전환계획/승인시 예외: 금융주력자와 동일 취급
  - 외국인 비금융주력자: 외국인투자촉진법 내에서 국내 금융주력자와 동일한 수준
  - 입법배경:
    -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규제 완화
    - 대주주에 대한 검사 및 감독 기능은 강화 / 은행산업의 대형화 및 경쟁력 제고
    - 자본확충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 정부소유은행의 원활한 민영화 추진
    - 최초 10%를 제안하였으나 8% 주장 견해가 있어 최종 9% 로 의결됨
- **2009년 금융지주회사법[2009. 12. 1. 시행, 법률 제9788호 2009. 7. 31. 일부개정]**
  - 2009년 은행법과 동일 내용

## 은행법 은산분리 연혁

- **현행 은행법[2014. 2. 14. 시행, 법률 제12101호 2013. 8. 13. 일부개정]**
  - 동일인 취득제한: 10% 초과 금지 - 10%, 25%, 33% 초과 보유시 금융위 승인
  - 비금융주력자: 4% 초과 금지
    - 의결권 행사 없음 조건으로 금융위 승인을 얻어 10%까지 취득가능
  - 외국인 비금융주력자: 국내 금융주력자와 동일한 수준
  - 입법배경:
    - 2009년 규제완화를 통하여 금산분리제도 완화하였으나, 재벌에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
    - 은행의 사금고화, 이해상충문제, 대주주인 기업부실의 은행전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산분리 다시 강화
    -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을 산업자본으로 판단하는 기준 강화
    - 산업자본의 PEF 출자비율은 18%에서 10%로 강화(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
      - ❖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현행 은행법과 동일함

## 은행법상 대주주 거래 제한

- 1950년 은행법 [1950. 5. 5.제정, 법률 제139호]
  - 제한 없음
- 2002년 은행법 [2002. 7. 28. 시행, 법률 제6691호, 2002. 4. 27. 일부개정]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 신설 -
    - 각 대주주: 자기자본의 25% 또는 대주주 출자비율 해당금액 중 적은 금액
    - 전체 대주주: 자기자본의 25%
  - 대주주 발행 주식취득 한도 - 자기자본의 1% 한도
    -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0.1% 또는 50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 재적이사 전원 찬성 요함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 대주주 제한 규정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 *현행 은행법상 동일하게 유지됨*

## 논의 과제

## ■ 분석

- I.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지분 보유 제한 및 은산분리 규제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 요소
  1.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
    - 1) 금융시장의 발전 및 금융소비자의 편익 고려
    - 2) 해외 인터넷전문은행과의 경쟁 고려
  2.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산 건전성
    - 1) 사금고화 방지
    - 2) 대주주 위험 전이 방지
  3. 은행업 설립 인가는 행정법학상 특허로서 은행업을 영위할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임.
  4.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

 분석

## II.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필요성

- 현행 은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려 하는 ICT기업을 비롯한 비금융주력자의 경우, 심지어 금융위의 승인을 얻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4%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음 →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유인이 전혀 없음
- 그러나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설립 주체와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임
- 따라서 ICT기업을 비롯한 비금융주력자라도, 금융시장 발전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에 도움이 되는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출할 경우, 은행업에 진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 ■ 분석

### III.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경우의 문제점과 그 대책

- 은산분리 규제의 핵심 중 하나는 재벌의 자본집중 및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재벌 뿐만 아니라 중소 규모의 일반 비금융사업자도 모두 포함. 따라서 ICT 기업 등도 원천 배제

####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비금융주력자의 정의) 중 가목

가.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이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

## ■ 분석

### III.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경우의 문제점과 그 대책

- 은산분리 규제의 핵심 중 하나는 재벌의 자본집중 및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재벌에 대하여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도 여전히 진출을 불허하되, 그 기준을 개정할 필요성

####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비금융주력자의 정의) 중 나목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

위 규정은 2002. 4. 27. 은행법 개정 당시 신설, 그런데 위 2조원이라는 기준은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기준이었음.

그러나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기준은 5조원 인바, 5조원으로 하더라도, 공기업을 제외하고서도 거의 50개에 달하는 기업집단이 이에 포함됨.

## ■ 분석

### III.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경우의 문제점과 그 대책

- 은산분리 규제의 핵심 중 다른 하나는 대주주의 자금고화 및 위험전이 risk임.
- 이 문제는 은행업 진입 단계에서의 금융위 인가 제도, 은행업 운영 단계에서의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 은행 경영의 독립성 확보 등을 통하여 해결.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 ①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4.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5.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7.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 금융시장의 안정, 은행의 건전성 확보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은행업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 ■ 분석

### III.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경우의 문제점과 그 대책

- 은행업 인가는 행정법학상 특허로서 정부가 은행업을 영위할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임.
- 이러한 은행업 인가의 성격상 정부는 인가 여부에 대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가짐  
우리 은행법 또한 인가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 추상적, 포괄적인 문구들이 여러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가시 조건의 부과와 그 조건의 취소, 변경 절차까지 규정하여 금융위에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
- 선진 각 국도 금융감독당국의 은행업 인가에 포괄적인 재량권을 부여하고, 이러한 인가제도의 탄력적 운용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안정 및 발전을 꾀하고 있음
- 은행법을 개정하여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하여 아무나 될 수 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님.
-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 은행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그 사업 계획이 금융시장 발전 및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엄격히 심사함은 물론, 사업 모회사 등의 리스크 차단 장치, 은행 경영의 독립성 확보 장치 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검토하는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분야의 심사를 당연히 더 엄격하게 할 것으로 예상됨.
- 나아가 인가를 할 경우에도 사업 모회사 등의 리스크 차단 장치, 은행 경영의 독립성 확보 장치 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핵심 내용을 인가 조건으로 할 수도 있을 것임.

## ■ 분석

### III.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경우의 문제점 논의

- 대주주의 사금고화 및 위험전이 문제는 진입 단계에서의 인가 제도 뿐만 아니라, 은행업 운영 단계에서의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 은행 경영의 독립성 확보 등을 통하여도 해결할 수 있음.
- 이미 우리 은행법은 대주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5% 또는 대주주 출자비율 해당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만 신용공여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하고 있음
- 또한 대주주 발행 주식도 자기자본의 1% 한도 내에서만 취득할 수 있게 하면서도,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0.1% 또는 50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 은행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을 얻도록 함.
- 그럼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 규제들을 더 강화할 수도 있음.  
일본의 경우 은행법에서, 우리 은행법의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와 유사하게, 기업그룹 거액신용공여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5% 한도 규제를 하면서, 은행 주요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는 15% 한도 규제를 하고 있음.  
우리 은행법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25%에서 15%로 줄이거나 대주주 발행 주식을 아예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 논의 과제

### III.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경우의 문제점 논의

-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을 위해 현행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은행업 진입이 가능한 주체만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을 추진해야 하는지?
- 은행법상 은산분리 조항을 완화해야 한다면, 인터넷전문은행 대해서만 완화해야 하는 논거는 무엇인지?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조항을 완화한다면, 별도의 지분보유 한도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비금융주력자의 정의를 수정할 것인지
-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같은 소위 재벌의 진입도 허용할 것인지
-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예. 대주주의 사금고화, 대주주 부실의 전이)를 위해 추가적인 대주주 거래 관련 규제가 필요한지

감사합니다